

<현행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 '일반전자서명' 그리고 개정법안상 '전자서명' 비교>

	현행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	일반전자서명	전자서명(개정안 제 2 조 제 2 호)
목적	·법에서 서명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자화할 때, 자필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적 수단을 제공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개정안 제 3 조)
효력	·전자서명법 제 3 조에 의해 서명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전자문서의 진본성·무결성을 보장, 부인방지 기능을 수행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개정안 제 3 조 제 1 항) ·전자문서의 진본성·무결성을 보장, 부인방지 기능을 수행(개정안 제 2 조 제 2 호 전자서명의 당연한 기능)
요건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특별한 요건 없음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개정안 제 2 조 제 2 호)
이용 범위	·법에서 서명 등을 요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본인확인(전자서명법 제 18 조의 2)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개정안 제 3 조) · 다른 법이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본인확인 용도로 당연히 이용
발급 기관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발급	·일반인증기관에 의해 발급	· 미래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이 발급(개정안, 제 4 조 제 1 항, 제 2 항)
발급 기관 요건	·법에서 정한 기술적·재정적 요건을 갖추고, 국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음	·특별한 요건 없음	· 법에서 정한 기술적, 재정적 요건을 갖추고, 전문적, 독립적 제 3 자의 정기적 검증을 받아야 함. (개정안 제 4 조 제 4 항)